

제 6 기 결 산 공 고
(별 도) 재 무 상 태 표

(2018 년 12 월 31 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현금및현금성자산	54,391,108,07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530,362,373
2. 단기금융상품	10,600,000,000	2. 유동성장기부채	21,993,504,747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046,388,163	3. 기타유동부채	114,916,964
4. 당기법인세자산	71,088,680	4. 기타금융부채	138,777,991
5. 기타유동자산	520,934,210	II. 비유동부채	
II. 비유동자산		1. 사채	49,721,374,039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625,943,759	2. 장기차입금	19,360,517,553
2. 종속기업주식	55,071,508,294	3. 순확정급여부채	141,658,898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322,399,392,071	4. 이연법인세부채	5,715,529,303
4. 유형자산	297,147,205	부 채 총 계	99,716,641,868
5. 무형자산	118,570,396	자 본	
		I. 자본금	364,478,440,000
		II. 기타불입자본	(1,747,845,660)
		III. 이익잉여금	29,673,631,078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2,978,786,435)
		자 본 총 계	369,425,438,983
자 산 총 계	469,142,080,85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90,910,980,153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제 6 기 (별도) 재무상태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3 월 20 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797 번길 17
대 림 에 너 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상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6 기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 진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이정희

제 6 기 결 산 공 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2018 년 12 월 31 일 현재)

(단위: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1. 현금및현금성자산	90,152,200,293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089,247,516
2. 단기금융상품	10,600,000,000	2. 유동성장기부채	21,993,504,747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90,252,437	3. 기타유동부채	948,095,928
4. 당기법인세자산	75,533,430	4. 기타금융부채	138,777,991
5. 재고자산	2,654,617,573	5. 당기법인세부채	78,881,860
6. 기타유동자산	4,399,520,116	II. 비유동부채	
7. 계약자산	10,966,745,910	1. 사채	49,721,374,039
II. 비유동자산		2. 장기차입금	210,790,916,825
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629,100,839	3. 순환정금여부채	188,633,775
2.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322,399,392,071	4. 이연법인세부채	5,060,204,926
3. 유형자산	215,728,117,593	부 채 총 계	310,009,637,607
4. 무형자산	3,798,843,310	자 본	
5. 이연법인세자산	37,479,422	I. 자본금	364,478,440,000
6. 기타비유동자산	103,275,349	II. 기타불입자본	(1,796,110,749)
		III. 이익잉여금	29,673,632,831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2,930,521,346)
		자 본 총 계	369,425,440,736
자 산 총 계	679,435,078,34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79,435,078,343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제 6 기 (연결) 재무상태표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3 월 20 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2797 번길 17
대 림 에 너 지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상우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6 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 진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이정희